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11
----------	-------

발의연월일 : 2025. 6. 23.

발 의 자 : 이병진 · 김성환 · 송재봉
이원택 · 김동아 · 박용갑
이광희 · 권향엽 · 이해식
김병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실화로 드러나고 있는데 산불 원인의 상당 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진화 비용에 대한 청구, 방화자의 산림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산림관련기관에 취업

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방화범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 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신설 등).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림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죄

나. 제76조에 해당하는 죄

제49조제2항 중 “산불피해 복구”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 피해 복구”로 한다.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산림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조합(이하 “산림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산림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산림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산림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의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조합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림관련범죄 전력을 확

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산림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산림청장은 산림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7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산림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4조의4(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산림청장은 제7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산림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의 죄를 범하여 산불의 피해 면적이 70만 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u><신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산림관련범죄”란 다음 각</u> <u>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죄를 말한다.</u> <u>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죄</u> <u>나. 제76조에 해당하는 죄</u>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생략)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 인제공자에게 <u>산불피해 복구</u>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청구할 수 있다. <u><신설></u>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u>산불 진화에 소요</u> <u>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u>----- ----- -----. <u>제74조의2(산림관련기관의 취업</u> <u>제한 등) ① 법원은 산불관련</u> <u>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u>

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조합(이하 “산림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산림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산림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를」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산림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의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조합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

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림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산림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74조의3(취업제한명령을 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
검·확인) ① 산림청장은 산림
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
고받은 자가 제7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관련기관을 운영
하거나 산림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
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74조의4(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산림청장은 제7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
여 산림관련기관의 장에게 그

제76조(벌칙) ① ~ ④ (생 략) <u><신 설></u> ⑤ (생 략)	<u>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u> 제76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죄를 범하여 산불 의 피해 면적이 70만 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